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보험회사 등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2013년 7월 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8일 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규정')도 개정·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 개선(영 제57조 제2항 신설)

개정 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②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 등(이하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영 제57조 제1항).

그런데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가 3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2)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금지(영 제57조 제5항 제2호, 규정 제7-13조의2 신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①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②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함께 신설함으로써, 이번 개정 내용이 보험회사 대주주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영 제57조 제2호).

또한 위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공익법인등에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② 무상양도등 행위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③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④ 관련 현황 및 적정성 점검·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⑤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에만 양도자산이 이용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⑥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없을 것, ⑦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등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정 제7-13조의2 제1항, 제2항).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호 통과 및 관련 감독규정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